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 보고서

201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1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0.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 가. 상정 이유

종로구의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인 아동친화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 내용

- 1)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2)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5조)
-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8조)

- 4)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제28조)
- 5)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안 제29조 ~ 제3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로구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전국 최하위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구의 아동 인구 감소 추세(2015년 합계출산율 0.81명)와 빈번한 아동학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됨.

※ 인구대비 아동비율 : 종로구 12.5% (서울시 14.9%, 전국 17%)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아동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범위내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2016. 9. 9. ~ 9. 29.)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나. 제정안의 주요내용

### ○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2조 및 제3조)

- 아동,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용어의 뜻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체계 구축과 재정상의 조치, 시책과 사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기준 (안 제5조)

-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 이익 최우선으로 함.
- 아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잠재능력을 발휘토록 보장되어야 함.

###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안 제9조 ~ 안 제18조)

- 인원 : 15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 위원장은 부구청장,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
- 대상 : 종로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아동 정책 전문가 등
- 임기 : 2년이며, 한 번만 연임가능.

### ○ 아동참여위원회 (안 제19조 ~ 제27조)

- 인원 : 2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대상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 임기 :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가능.

○ 아동영향평가 (안 제28조 ~ 제30조)

<아동영향평가 대상>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종합의견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종로구 만 19세 미만 인구 현황 (기준일자 : 2016. 8. 31)

연번	동명	0세 ~ 18세 미만 (아동)			만 18세 (청소년)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b>19,290</b>	9,931	9,359	<b>1,722</b>	867	855
1	청운효자동	2,335	1,259	1,076	179	94	85
2	사직동	1,365	702	663	84	39	45
3	삼청동	339	180	159	36	19	17
4	부암동	1,541	815	726	126	60	66
5	평창동	2,861	1,501	1,360	266	141	125
6	무악동	1,568	749	819	104	39	65
7	교남동	572	286	286	55	25	30
8	가회동	587	280	307	53	30	23
9	종로1~4가동	498	274	224	39	19	20
10	종로5·6가동	402	201	201	61	37	24
11	이화동	885	423	462	94	44	50
12	혜화동	2,094	1,079	1,015	217	100	117
13	창신1동	526	260	266	53	28	25
14	창신2동	1,043	533	510	125	71	54
15	창신3동	1,043	551	492	93	54	39
16	승인1동	836	426	410	66	34	32
17	승인2동	795	412	383	71	33	38

#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2조 제2항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기간 : 2016년 ~ 2020년 (5개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출	○						
	○						
	소계(b)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구비	지방세수입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합계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5. 작성자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5,000천원  
(구성원 : 15명 이내, 1인당 참석수당 70,000원 / 정기회 2회 실시, 필요시 임시회 실시)
-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 5,000천원  
(구성원 : 20명 이내, 수당 없음.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아동영향평가 용역 : 20,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및 아동예산서, 책자 발간 : 15,000천원  
(리후렛 제작, 기념품 제작, 포럼 실시, 아동권리교육 실시)
-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 5,000천원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목적 : 각 지자체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인 아동친화사업 진행

○ 기능

- 시·군·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국제적인 연대감 조성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우수사례 상호 교환
- 우수사례 발표, 정보와 경험 교환, 전문가 강연 실시

○ 임원(2016. 9. 2.현재)

- 회장 1인, 부회장 5인, 고문 5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회 장	서울 성북구	김영배	고 문	서울특별시	박원순(신임)
				부산광역시	서병수(신임)
부회장	서울 송파구	박춘희		광주광역시	윤장현
	부산 금정구	원정희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경기 오산시	곽상욱		전북 군산시	문동신
	충남 아산시	복기왕	감 사	경북 영주시	장옥현
	전북 전주시	김승수		충북 충주시	조길형
사무국장 : 성종은(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3팀장)					

※ 협의회 회원 모든 광역단체장을 고문으로 추대(2016. 9. 2. 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현황>

('16. 9. 2. 현재)

행정 구역	가입 지방자치단체 (36개 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16.2.24), 강동·강서·금천·노원·도봉·성동·성북·송파구, 서울특별시('16.5월), 서대문구('16.6월), 광진구('16.8.10.)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오산시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구미시, 영주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16.6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인천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순천시('16.8.22.)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16.7월)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

# 「아동권리헌장」 제정

---

2016. 5. 2.(월)

보건복지부

## I. 아동권리헌장의 제정 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89년 제정)을 준거로 하여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하는 노력 시급
  - 우리나라는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수준도 낮음
  -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부모·가족으로부터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을 보여줌
- 아동권리헌장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할 필요\*
  - \* 「아동학대 방지대책」 아동권리헌장 제정 명시(아동정책조정위원회, ‘16.3.29)
  - **어린이헌장**(‘57년 제정, ‘88년 개정) 및 **청소년헌장**(‘90년 제정, ‘98년 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성인 중심의 아동양육 시각이 남아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제한적임
    - \* 아동은 UN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으로 규정, 어린이는 국어사전에 초등학생까지로 정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
- 아동권리헌장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의 비전인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실현에 기반이 될 것임
  - 향후 아동 NGO 및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확대 시 적극 활용

## Ⅱ. 아동권리헌장

### 아동 권리 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원칙

(인증기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①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
- ②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 ③ 아동 권리 전략 개발 :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전략 개발
- ④ 아동 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의 마련
- ⑤ 아동영향평가 :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 ⑥ 아동 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
-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 ⑧ 아동권리 홍보 : 모든 주민에게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운영 : 아동권리 증진 비정부기구 지원 및 개발
-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 관 계 법 령

## □ 「아동복지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53호, 2015.12.2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 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

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6.3.22.>

[시행일 : 2018.3.23.] 제4조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함)